이달의 초점

현 정부의 주요 장애인복지·건강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돌봄 제도로서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황과 과제

|황주희|

장애인 개인예산제 추진 현황과 과제

|이한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추진 현황과 실행 과제

|김미옥|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현황과 과제

|호승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보건복지포럼 [2024. 04.] DOI: 10.23062/2024.04.3

장애인 개인예산제 추진 현황과 과제

The Personal Budgets Scheme: Current Status and Areas for Improvement

이한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현 정부의 국정 과제로 추진되어 2026년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개인예산제가 제도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현재의 사업 수행 현황을 둘러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예산제의 핵심 요소와 이를 실천한 민간의 사례를 돌아보고, 보건복지부 용역 연구에서 제안한 기초 모델과 이를 기반으로 시행한 2023년 모의적용사업의 개요를 살펴보았다. 자기주도적이고 유연한 서비스 이용이 개인예산제의 핵심적 요소이지만, 현재의 개인예산제 모델은 자기주도성을 구현하기에는 적지 않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인예산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원 인력과 조직의 역량 강화, 이용자 교육, 충분한 급여량의 확보와 인프라의 확충을 제안하였다.

1 들어가며

개인예산제(Personal budgets)는 돌봄서비스 이용자의 권한 강화와 재정의 효율화를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으로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다(Duffy, 2021). 지원이 필요한 대상의 욕구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급여를 할당하고 자기주도적 이용을 지원하는 개인예산제의 이용자 중심 재정 지원 방식(user-centred funding model)은 이용자에게 소비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자율성과 선택권을 증진한다. 자원(예산) 할당은 공공이 담당하지만, 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판매자'인 다양한 층위의 민간과 분담함으로써 돌봄에 관여하는 주체의 폭을 확장한다. 이는 지역사회 기반 돌봄을 확대하고, 비용 효과성이 낮은 데다 이용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반하는 거주시설 입소를 예방하는 데에도 유

용하다. 국외의 많은 국가가 이와 같은 이유로 개인예산제를 도입하였으며(Duffy, 2021, Leventi, 2021, Glasby, 2013), 이용자 만족, 삶의 질, 웰빙 증진 등의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Robinson et al., 2022; Micai et al., 2022, Fleming et al., 2019).

개인예산제의 적용이 장애인에게만 국한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이용자의 선택권 증진 이슈가 신체장애인의 자립생활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어(Duffy, 2021, Brüsseler Kreises, 2013) 많은 국가에서 장애인을 중심으로 도입을 논의하였으며, 한국의 개인예산제에 대한 관심 또한 장애인의 선택과 통제 권한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모색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0년 이후 활발해진 개인예산제 관련 연구는 주로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자기주도성을 강화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국외 제도나 국내의 도입 가능성과 타당성, 효과적 제도 설계 방안 등을 탐구하였다(이한나 외, 2019; 김진우, 2018; 이동석, 2015; 이승기, 이성규, 2014; 이동석, 김용득, 2013; 유동철, 2012; 원소연, 2010). 실천 현장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이나 자립생활센터 등 민간 영역을 중심으로 자기주도적 지원 계획 수립, 급여 사용 범위의 유연화, 서비스 급여의 현금 지급 등 개인예산제의 핵심 요소에 대한 실험이 진행되며 성과를 보고하여 왔다(김동홍, 정종화, 2021; 장재웅, 김경미, 2018; 윤재영, 2015, 2017).

이같이 개인예산제에 대한 학술적, 경험적 성과가 축적되는 상황에서 2022년 1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윤석열 후보가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하고, 당선 이후 국정 과제 47번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향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에서 추진을 공식화함으로써 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가 극대화되었다. 2023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서 복지서비스 분야의 주요 과제로 개인예산제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밝히며 정부계획을 구체화하는 등(관계부처 합동, 2023) 개인예산제의 도입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개인예산제에 대한 기대만큼 우려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한국과 같이 장애인복지 예산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는 재정 효율성을 중시하는 개인예산제의 도입이 장애인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대 입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17년 서울시에서 추진한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시장 논리에 의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장애인의 수급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힌 바 있으며(최석범, 2017), 대선 시기에도 "다양한 서비스가 없고, 급여량 판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자기주도성도 없는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서비스 간 칸막이를 허물어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개인예산제는 허구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2). 국외에서 개인예산제를 예산 절감의 수단으로 활용한 예를 제시하며 장애인 예산 삭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개인예산제의 유해성을 지적하거나(김도현, 2022) 개인

예산제의 취지에 동의하더라도 자기주도성의 실현이 부족한 현재의 방향이나 설계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기도 한다(안형진, 2024). 국외에서는 주도성을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적 부담(Micai et al., 2022), 자기주도 지원의 낮은 성과(Slasberg et al., 2013)를 약점으로 지적하고, 재정 효율화라는 취지로 인한 향후 예산 확대에 소극적일 가능성(Needham & Dickinson, 2018)을 우려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2023년 개인예산제의 첫 실험인 모의적용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본사업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 제도 도입이 임박한 시점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본래 취지와 현재의 좌표를 점검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의 이행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이를 위해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배경과 현재의 제도 설계, 이행 상황을 살펴보고, 개인예산제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2 개인예산제의 핵심 요소와 국내 실천 사례[1)]

개인예산제의 특성은 개인별 욕구 사정과 할당, 이용자 재정 지원과 같은 재정 원리나 공공의 자원 할당, 민간의 서비스 제공과 같은 기능 분담 구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개인예산제는 본질적으로 서비스의 목표, 실천 방법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설계 형태는 국가와 지역마다 다양하나(Leventi, 2021; Pike et al., 2016; 이동석, 2015) 서비스의 개별유연화(personalisation)와 이용자 주도성(user-direction)을 중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개별유연화는 서비스의 설계 방향과 관련된다. 개별유연화된 서비스는 이용자가 각각의 선호가 있고, 자신의 욕구 충족 방법을 가장 잘 알아 이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Carr, 2010). 모든 경우에 통용되는(one-size-fits-all) 표준화된 전통적 서비스의 대척점(Leadbeater, 2004)으로의 개별유연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맞게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Mladenov et al., 2015). 즉 개별유연화의 가치는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유연한 성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용자 주도, 또는 이용자의 자기주도(self-direction)는 개별유연화를 극대화하는 서비스 제공 방법으로, 이용자를 돌봄과 지원의 중심에 두고 서비스를 계획하여 전달한다(Bradley et al., 2021). 이

1) 이한나, 김윤영, 이민경, 김동기, 김용진, 이정기, 전지혜. (2019). 사회서비스 분야 개인예산제도에 관한 기초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장 제2절, 이한나, 하태정, 어유경, 김동기, 신권철, 최복천. (2021). 개인예산제 운영모형 수립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3장 제2절을 축약·보완하였다.

는 이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구현되는데, 이용자의 권한은 크게 지원 인력을 채용·교육하고 급여와 휴가 등을 제공할 '고용주로서의 권한과 책무(고용 권한)'와 할당된 예산으로 필요한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자로서의 권한과 책무(예산 권한)'로 구분된다. 이러한 권한과 책무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자기주도적 이용을 지원할 조력자가 필요하다. 개인예산의 관리를 지원하는 재정 관리자, 지원을 위한 자원을 연계하는 중개인(broker), 복합적 욕구를 가진 이용자를 위해 서비스를 구성·조정하는 코디네이터(사례관리자),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등은 이용자의 자기주도적 서비스 이용을 조력할 수 있는 지원체계이다. 즉 자기주도적 서비스 이용은 '이용자에게 주어지는 구체적 권한'과 '권한 행사를 조력하는 지지 체계'가 핵심이 된다.

개인예산제의 실천 방법에 관한 핵심 개념 중 하나로 사람중심계획(PCP: person-centred planning)을 들 수 있다. PCP는 발달장애인의 자기주도적 지원을 위한 핵심 요소이자 원리로, '이용자에게 중요한 것'에 관심을 두고 이들이 표현하는 선호나 관심에 맞게 개별화된 접근법을 조직하는 것을 말한다(윤재영, 2016; O'Brien et al., 2010). PCP는 이용자의 결핍보다는 이들의 소망에 주목하고, 소망을 이루기 위한 절차와 여기에 필요한 지원을 계획하고 조직한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율성과 통제의 권한을 부여하고, 이용자가 단계마다 자기결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이용자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인적 자원망인 지원 서클(circle of support)을 구성하는 것이 PCP의 주요한 실천 방법이다(Brewster & Ramcharan, 2005).

지난 10년간 국내의 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센터 등의 실천 현장에서 수행한 개별유연화 사업은 개인예산제의 이런 실천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서울시 송파구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개별유연화 서포트 서비스'를 들 수 있다. 2015년 초에 시작한 이 사업은 PCP 이념에 입각하여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인별 욕구 사정, 자기주도적 계획 수립, 조력자의 급여 이용 및 정산의 지원 등 개인예산제의 중요 요소를 이행하였으며, 예산을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여 급여 사용의 유연성을 극대화하였다(윤재영, 2017). PCP의 원리에 따라 개발한 국외의 욕구 평가나 계획 수립 도구를 번역하여 활용한 것도 실험적 시도였다. 사업 참여자는 PCP 이념에 따른 활동지원서비스인 '액티브 서포트'[2]와 사교적 활동, 문화여가 활동 등에 예산을 지출하였다. 예산의 용도 제한을 최소화하여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한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한 끼 산다' 등 사회적 지위 획득이나 역할 수행과 관련된 비용도 할당된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었다(이한나

2) 사람 중심 이념의 발달장애인 지원에 적합하도록 훈련을 받은 지원 인력(액티브 서포터)이 기존 활동지원급여보다 높은 단가의 인건비를 받고 이용자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외, 2021).

서울시 동대문구 동문장애인복지관의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사업으로 2020년에 시작되어 복지관 자체 사업으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 사업에는 20~30대의 신체 및 발달장애인 36명이 참여하였는데, 생활에 필요한 모든 재화 및 서비스가 아닌 참여자가 평소 지출하지 못하는 사회적 욕구, 미래를 위한 계획 등에 예산을 지원하였다. 발달장애인이 지원 서클을 구성하고 이들과 함께 사람중심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핵심 과업으로 하였으며, 지원 예산은 이용자의 기능이 아닌 욕구에 기반하여 할당하였다. 복지관의 담당 인력은 사람 중심의 욕구 평가, 참여자 중심 개별계획 수립, 개인예산제추진지원단을 통한 승인, 계약서 작성, 참여자 소양 교육, 서포터 및 종사자 교육, 개인예산 배분, 참여자 개인예산 운영, 예산 운영에 대한 상담과 모니터링, 평가 등을 주요 과업으로 수행하였다(김동홍, 2022).

민간 영역에서 전개한 사업은 개인예산제의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인 공공의 자원 할당 기능이 배제되는 한계가 있다. 합리적 욕구 평가와 이용자가 관여하는 사정 간의 균형, 공적 자원의 합당한 배분은 개인예산제가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이나, 재원과 주체가 민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의 실험에는 제한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의 유연성과 이용자의 자기주도성을 구현하기 위한 체계를 파악하고, 이를 종사자들의 실천을 통해 구현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제도화된 개인예산제가 툲아보아야 할 실천 지점, 궁극적으로 이용자에게 기대하는 변화, 가시적 성과를 제시하는 데에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장애인 개인예산제 기초 모델 제안[3)]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2024~25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본사업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3).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2022년 개인예산제 기초 모델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였다(이한나 외, 2022). 해당 연구에서 제안한 복수의 모델은 2023년 6개월간 시행한 모의적용 모델의 기반이 되었는데, 이 장에서는 '바우처 유연화 모델', '활동지원서비스 기반 모델' 두 개의 기초 모델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바우처 유연화 모델

개인예산제의 구현 방식으로 처음 고안된 것은 현행 장애인 전자바우처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칸막이의 해소였다. 이한나 외(2019)는 활동지원, 발

3) 이한나, 하태정, 오욱찬, 김성희, 김동기, 신은경, 이동석. (2022).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1단계 시범사업 기초모델 개발 연구(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4장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이한나. (2023).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행과 향후 과제: 2023년 보건복지부 모의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23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을 축약, 보완하였다

달장애인활동(주간활동, 방과후활동), 발달재활 3개 바우처의 칸막이 해소를 제안하였으며, 후속 연구를 통해 이에 더해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보조기기 교부,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 등의 급여량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를 제안한 바 있다(이한나 외, 2021). 따라서 기초 모델 연구는 초기에 경계를 유연화하여 통합된 바우처와 이와 함께 칸막이를 해소하여 사용할 수 있는 추가적 서비스를 탐색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즉 현재 공적 영역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급여를 '한주머니'로 만들어 이 중 각 서비스를 본인이 필요한 만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각 서비스 급여량에서의 유연성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개인이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용도는 현재의 공적 급여 보장 범위 중 수급권을 인정받은 범위로 제한된다.

칸막이 해소의 가능성은 국고가 투입되는 중앙부처(복지부 이외 포함) 주관의 장애인에 대한 배타적 지원(등록 이전 영유아 포함)으로, 사업 지침 등에 의해 서비스 기준 단가 또는 지원 상한 금액을 제기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장애인 본인이 아닌 가족이 사용하는 급여도 포함하였으며, 기존 연구 결과를 반영,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보건의료, 시설 장기 거주 등 개인예산제 취지 부합성이 낮은 사업은 제외하였다(이한나 외, 2021). 크게 활동, 재활, 문화·여가, 주거, 가족 지원, 보조기기 영역으로 구분하여 위 조건을 충족하는 중앙부처의 서비스를 살펴보고 통합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들을 정리하였다.[4)]

먼저 신청 단계에서 접수, 조사, 수급 결정 주체가 지자체, 사업 수행기관[5)]이나 사업 관리기관[6)] 등으로 각기 상이한 문제가 있다. 둘째, 서비스별로 수급 자격을 판정하는 욕구 조사가 다르다. 셋째, 지원 방식에 차이가 있다. 개인예산의 급여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은 이용자 대상 재정 지원을 전제하는데, 검토 대상 중 제공 기관 지원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지원 방식을 전환하면 이용자의 급여량 조정으로 인한 세입 축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환을 선호하지 않을 수 있다. 넷째, 본인부담금 체계가 상이하다는 점도 유연화에 장벽이 된다. 사업별 본인부담금 부과 방식이나 납부 기관이 달라 체계가 매우 복잡하며, 기관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섯째, 불용 바우처의 이월 및 소멸 기준이 당월 소멸, 익월 이월 후 소멸, 연내 이월 등으로 달라 이를 통합 사용할 경우 혼선이 예상된다. 이 외에도 각 사업의 운영 재원이 불일치하여 재정을 통합 운영할 경우 국고 예산 전용 문제가 발

4) 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발달장애청소년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언어발달,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중 보완대체 의사소통 활용 중재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털 서비스,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 스포츠 강좌, 교육부 장애대학(원)생 교육활동지원사업,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근로자 지원, 국토교통부의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다.

5)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예를 들어 교육부의 '장애대 학생 교육활동지원사업'의 경우 수행기관이 각 대학의 장애 학생 지원센터이다.

6) 중앙부처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관리하나, 직접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 기관이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장애인근로자지원사업의 관리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다.

생한다는 점도 개인예산제 도입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연구진은 이상의 장벽을 감안하여 단계적 바우처 통합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사업 간 경계를 허문다는 부담으로 인해 모의적용 모델로 채택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글에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서비스 간 급여량과 전달체계가 분절되어 있는 것은 개인의 주도성과 유연성을 중시하는 개인예산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상황이라 할 수 없다. 길게 볼 때 개인예산제의 원활한 정착과 확장을 위해서는 서비스 간 경직성을 해소하는 것은 필요과제이다. 특히 바우처는 수년 전부터 칸막이의 전부, 또는 일부 해소 요구가 있었고, 2019년 활동지원과 발달장애인 활동 바우처 간 급여량 조정 시범사업도 시행한 바가 있는 만큼 기대 수준이 높아 개인예산제의 단계적 추진에 해당하는 과업으로 유연한 사용을 증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활동지원서비스 기반 모델

활동지원서비스 기반 모델은 활동지원 수급자로 대상이 제한된다. 개인예산으로 사용하는 급여도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결과 할당된 활동지원급여 중 일부이다. 활동지원제도 위에 '얹혀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신청부터 급여량 판정까지의 절차는 활동지원서비스와 동일하다. 급여량 판정 후 참여자 지원기관으로 지정한 국민연금공단 지사[7], 또는 장애인복지관의 담당 인력이 이용자와 함께 개인별 지원 계획을 작성하여 할당받은 활동지원급여 중 일부를 본인이 자율적으로 필요한 용도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예산제를 이행하는 모델이다.

활동지원서비스 기반 모델은 이용자가 활동지원사를 직접 고용하는 '활동지원 유연화 모델'과 활동지원급여 일부를 이용자가 일정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비사회서비스 통합 모델'로 구분된다. 활동지원 유연화 모델은 개인예산을 운영하는 국가에서 보편화된 선택지인 '직접 고용'을 실험하기 위한 모델로 제안하였으며, 활동지원사 단가를 해당 연도 기준 단가의 2배 이내 범위에서 이용자와 활동지원사의 합의하에 정할 수 있다. 비사회서비스 통합 모델은 활동지원급여 일부(연구진 제안 최대 30%)를 개인별 지원 계획에 근거하여 이용자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원 계획은 시군구와 이용자 간 서면으로 합의하며, 활동지원사의 직접 고용, 자율사용 급여 등 바우처로 지출할 수 없는 급여는 분리된 통장으로 현금 수령하고 체크카드를 통해 지출을 관리한다. 개인예산은 음주, 흡연, 도박, 부채 상환, 저축, 보험 등의 금융상품 구매나 개인별 지원 계획과 관련 없는 의식주 비용(공과금 납부 포함)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급여의 적정한 사용을 확인하

7) 장애인 서비스 지원종합조사를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으로 담당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기능과 전국의 모든 시군구를 포괄하는 접근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참여자 지원기관으로 설정하였다.

기 위해 정기적 정산 과정을 거친다.

활동지원 기반 모델은 제도 간 경계의 희석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타 부처나 부서의 저항 없이 비교적 신속하고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다. 바우처 통합 모델과 달리 개인예산을 현재의 공적 급여 범위 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약점이 있다. 먼저 '활동지원 유연화 모델'은 활동지원사를 직접 고용하여 고용주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이용자의 조력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비하다. 중개기관 없이 직접 활동지원 인력을 채용하고 인사 노무를 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응이 곤란할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신뢰할 만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선뜻 직접 고용을 선택하기 어렵다. '비사회서비스 통합 모델'은 활동지원급여를 타 용도로 사용한다는 결정적 약점이 있다. 활동지원급여는 개인의 기능 제약과 사회적 상황을 사정하여 필요 활동지원 시간으로 산출되며, 산출된 급여량은 신체활동, 사회활동을 하는 데에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이 전제이다. 그러나 비사회서비스 통합 모델은 활동지원급여를 다른 욕구에 지출하게 함으로써 활동지원 시간이 필요 이상으로 할당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되고 활동지원 급여량 확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표 1] 개인예산제 기초 모델의 가능성과 제한점

구분	가능성	제한점
바우처 유연화 모델	바우처 사용의 유연성 확보 가능 급여 용도가 현재의 '공적 급여 보장 범위'로 제한되기 때문에 오남용 우려가 낮음.	단계별 확대 방안 마련의 어려움 행정절차의 복잡성
활동지원 유연화 모델	- 상대적 실행 용이성 - 추후 개인예산제도의 기반이 됨 (예, 활동지원제도 유연화 → 비사회서비스로의 확대 → 바우처 통합 → 지역사회재활서비스 통합 → 거주서비스 통합)	- 활동지원제도 개편에 가까움 - 고용주로서 책임 담당 부담감 - 법적 분쟁 발생 시 개인 대응 어려움 - 원활한 활동보조 인력 수급 어려움 - 서비스 질을 담보한 인력 채용 한계 - 근로기준법 준수 부담
비사회서비스 통합 모델	- 상대적 실행 용이성 - 활동지원 외 타 재화와 서비스 욕구가 높은 장애인들의 지지 확보 가능 - 단계별 확대 방안 마련 용이(예: 활동지원 유연성 확대와 비사회서비스 적용 → 지역사회 재활시설에의 적용 → 거주서비스에의 적용 가능)	- 활동지원제도 개편에 가까움 - 활동지원사의 소득 총량 감소 가능성 - 발달장애인에게 혜택이 다소 낮음 - 활동지원 급여량 산출 논거 약화 및 예산 삭감 우려 • 공적 급여의 시장 서비스 지출을 인정한다면 관련 욕구를 측정하여 그에 맞는 급여량을 할당하는 것이 합당 • 별도의 욕구 평가와 급여량 산출 체계 도입 필요

출처: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행과 향후 과제: 2023년 보건복지부 모의적용을 중심으로", 이한나. 2023,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23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표 6〉 수정. p. 80.

있다. 주어진 활동지원급여를 다 사용하고 있거나 부족한 개인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이용자는 만족하더라도 근로소득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 활동지원사의 집단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다. 비사회서비스 모델이 확대 가능한 적절한 제도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관련 욕구를 측정하여 그에 맞는 급여량을 할당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욕구 평가와 급여량 산출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제안한 복수의 모델 중 상대적으로 시행이 용이한 활동지원서비스 기반 모델을 모의적용 모델로 채택하였다.

이상의 모델은 현 공적 급여체계를 기반으로 개인예산제를 '만드는' 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2장에서 고찰한 자기주도 지원이나 사람 중심 실천과 같은 개인예산제 핵심 요소의 구현을 간과하고 있다. 서비스의 유연한 이용이 가능한 체계를 고안하였으나, 용도 용처 범위에는 한계가 있으며(바우처 유연화 모델), 자기주도 지원에서 강조하는 이용자를 조력하기 위한 지원체계에 대한 제안은 빈약하다. 참여자 지원기관으로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장애인복지관을 설정하고, 발달장애인은 PCP 방법으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였으나, 다양한 조력자의 역할(재정 관리, 지원 중개, 서비스 연계 조정, 옹호 등)을 지원기관 내에서 어떻게 분담하고 지역 내 다른 자원을 활용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공공 영역의 사업 모델에서는 구조의 설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종사자의 실천 기술과 방법은 개인의 역량에 일임되는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향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실천을 사업 구조를 통해 녹여내는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4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의적용[8)]

보건복지부는 2022년 제안 모델 중 '활동지원서비스 기반 모델'을 모의적용 모델로 채택하고, 2023년 6월부터 6개월간 서울 마포, 경기 김포, 충남 예산, 세종 4개 지자체에서 개인예산제 모의적용을 하였다. 모의적용은 시범사업 실시 이전 시행 모델의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시행하는 실험적 성격의 사업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용역연구를 수행하고,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협업하였다. 사업 수행기관과 지자체의 주요 역할은 〈표 2〉와 같다.

모의적용은 지역마다 20~40명, 총 120명을 목표로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나, 총 86명이 최종 참여하였다. 활동지원 수급권자에 한해 신청 자격이 주어졌고, 개인예산 급여량도 활동지원급여의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자격 기준이나 급여량에 대한 특

8) 한국장애인개발원. (2023). 2023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사업 안내(한국장애인개발원)의 1장을 축약하였다.

[표 2]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수행체계

기관		역할
보건복지부		개인예산제 모의적용사업 총괄
시군구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옹호기관 지정 개인예산제 모의적용사업 참여자 계획 중간 변경 검토 · 합의 개인예산제 모의적용사업 참여자 활동지원 급여 정산 · 관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개인예산제 모의적용사업 연구 - 모의적용사업 기준 설계 - 모의적용사업 모니터링단 운영 - 모의적용사업 결과 분석 및 성과 평가 -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기초 모델 도출
국민연금 공단	본부	- 개인예산제 모의적용사업 참여 지사 운영 지원 - 중앙·지역 간 전담 인력 실무위원회 운영 - 지역별 자원 목록 작성 -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수행 관련 제반 행정사항 처리
	지사	- 개인예산제 모의적용사업 참여자 발굴 · 신청 접수 - 개인별 개인예산 이용 계획 수립 - 개인예산제 지원위원회 참여 -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참여자 모니터링(이용, 정산 등)
한국장애인개발원		모의적용 사무국 운영 - 실무추진단 운영 - 모의적용사업 담당자 및 유관기관 교육 - 모의적용 참여자 발굴 홍보, 신청서 취합 및 선정 결과 알림 - 모의적용 참여 시군구 운영 지원 및 실적 점검 -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자문단 운영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시스템 구축·운영 전자바우처 시스템 기능 개선 - 개인예산제 모의적용사업 전용 계좌 개설 및 예탁금 관리 - 자율 급여, 필요 서비스 제공 인력(특수자격자) 급여 비용의 지급 - 시군구별 예탁금 정산 내역 통보
활동지원 제공기관		개인예산제 모의적용사업 참여자 발굴 · 신청 접수 (모델 2) 특수자격자 인사·노무, 정산
옹호기관		모의적용 참여자의 권리침해 신고에 대한 권익옹호

출처: "2023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사업 안내", 한국장애인개발원, 2023, p. 4.

별한 쟁점은 없었다. 사업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예산은 개인예산 이용 계획에 근거하여 사용한다. 개인예산 이용 계획은 지원기관(국민연금공단 지사)의 전담 인력이 참여자 대면 면담에 근거하여 수립하고 시군구에서 구성한 '지원위원회'에서 합의한다. 지원위원회는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7)와 같이 장애인복지에 전문성이 있는 지역의 민간 인사로 구성되었다. 지역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운영이 어려운 경

우 담당 공무원 1인이 직권으로 합의하고 참여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였다. 개인예산은 합의한 이용 계획에 기반하여 지출해야 하며, 계획에 기반하지 않은 예산의 지출은 긴급돌봄을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전담 인력은 개인예산 이용 계획 수립 외 참여자가 증빙 자료를 시군구에 제출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개인예산을 계획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만족하는지, 계획에 변경이 필요한지 등의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수행하였다. 기초 모델 연구 단계에서 국민연금공단과 장애인복지관, 복수의 기관으로 제안한 참여자 지원기관은 모의적용에서 사업 수행의 수월성 문제로 국민연금공단으로 단일화되었다.

둘째, 개인예산 급여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일부를 사용한다. 모의적용 참여자가 개인예산 이용 계획에 기반하여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할당받은 활동지원 기본급여의 10% 또는 20% 이내이다. 모델 1(급여 유연화)은 활동지원 기본급여의 10% 이내 범위에서 개인예산 이용 계획에 따라 주거, 일상생활, 신체건강 등의 영역에 지출 가능하고, 모델 2(필요 서비스 제공 인력 활용)는 활동지원 기본급여의 20% 이내 범위에서 개인예산 이용 계획에 따라 특수자격(수어통역, 보행지도, 안마 등)을 가진 필요 서비스 제공 인력을 2023년 활동지원 단가(1만 5570원)의 2배 이내 단가로 활용 가능하다. 자율 사용하는 개인예산은 개인이 선지출하고 사후에 환급받는다.

'급여 유연화 모델(모델 1)'은 2022년 연구에서 제안한 '비사회서비스 통합 모델'을 보완한 것이다. 변경 지점을 살펴보면 자율 사용 한도가 연구진이 제안한 30%에서 10%로 축소되었으며, 급여 지급 방법이 본인 지출 후 사후 정산·환급으로 바뀌었다. '필요 서비스 제공 인력 활용모델(모델 2)'은 '활동지원 유연화 모델'을 보완한 것인데, 이용자의 활동지원사 직접 고용을 배제하여 '직접 고용'이 아니라 '활동지원사가 아닌 특수자격자를 활용하는 모델'로 방향이 크게 바뀌었다. 이에 따라 자격 기준과 관계없이 기준 단가의 2배 범위 이내에서 활동지원사 급여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수자격자로 제한하였다. 또한 필요 서비스 제공 인력에게 지출할 수 있는 급여는 전체 활동지원급여의 20% 범위로 제한하였다.

모델 1과 2에서 개인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 사용하는 복지자원 표준 분류체계의 9개 대분류 중 제도와 모의적용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진 논의를 거쳐 '일자리', '문화여가', '안전 및 권익보장'을 제외한 6개 영역을 추려 모델 1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급여의 범위, 모델 2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수자격자의 범위를 〈표 3〉과 같이 정리하였다.

모델은 당초 1지역 1모델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모델1에 대한 선호가 높은 참여자의 욕구와 특수자격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 사업 진행 중 모델 2 지역으로 예정한 김포와 세종에서도 모델 1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모델 2는

[표 3] 2023년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의적용 급여 이용 범위와 필요 서비스 제공 인력 범위

지원 영역	급여 유연화 모델(모델 1)	필요 서비스 제공 인력 활용 모델(모델 2)
주거	- 주택 개조 - 주거환경 개선(도배, 장판, 집수리, 집 구조 변경)	-
일상생활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 장애인 자가용 개조 - 장애 관련 소모품(요실금, 변실금 패키지 등)	- 수어(수화)통역사 - 점역교정사 - 보행지도사
신체건강 및 보건의료	- 재활치료비(언어, 인지, 감각통합, ABA 등) -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장애인 보조기기 외 구입 또는 기준 단가 초과 추가 비용 - 건강기능식품 - 발달재활 바우처 추가 구매 - 안마서비스 - 지투서비스 추가 구매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 언어재활사 - 안마사 - 작업치료사
정신건강 및 심리정서	- 지투서비스 추가 구매	- 정신건강간호사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보호 및 돌봄·요양	- 단기거주시설 - 긴급돌봄	- 요양보호사 - 사회복지사
보육 및 교육	- 아이돌보미 기준 시간 이상 본인부담금	- 보육교사

출처: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행과 향후 과제: 2023년 보건복지부 모의적용을 중심으로", 이한나, 2023,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23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 83-84 수정.

참여자가 3명으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사업 개요의 마지막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전달체계를 유지한다. 개인예산으로 지출하는 급여 이외의 활동지원급여는 본래 활동지원(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간호지시서)에 이용하고, 개인예산으로 할당한 급여도 활동지원에 이용 가능하다. 장애인 활동지원의 신청, 방문조사, 수급자격 결정, 바우처카드의 발급과 급여 제공, 본인부담금 납부 등의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여 2023년 보건복지부 활동지원 지침을 따른다.

모의적용사업은 11월 30일에 종료하였지만, 성과 분석과 이에 기반한 시범사업 모델 제안은 2024년 3월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연구진은 장애인단체와 학계, 현장의 전문가, 수행체계의 협업기관 참관위원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사업 수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성과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보완점을 도출했다. 또한 행정자료, 참여자 만족도 조사, 사전 사후 설문조사, 초점집단 면접 등을 통해 성과평가를 하여 보고할 계획이다.

5 나가며

모의적용사업은 2024년 3월 현재 최종 결과 보고 이전이지만, 사업의 얼개가 이용자의 자기주도성을 구현하기에 적절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회의(懷疑)가 적지 않다. 현행 욕구 평가와 급여량 산정

체계를 고정하고 개인예산제를 설계하려니 자기주도 사정이 자리를 잡을 틈이 없었다. 서비스의 유연한 이용 범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하는 욕구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지만, 시도하지 못했다. 활동지원급여를 전환한 이용자를 중심으로 튼튼한 지원망을 구축하는 지원 방법을 지향하였으나, 실제 체계를 만드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모의적용의 모든 제한점, 또는 장벽을 시범사업 시기에 보완하거나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성숙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을 앞두고 풀어야 하는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욕구 평가와 급여량 산정 방법, 범위의 변경과 같이 큰 폭의 변화가 근본적으로 필요하나, 이는 시범사업 단계에서 제안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이 글의 결론에서는 비교적 단기적 접근이 가능하거나 급격한 방향 수정 없이 추진이 가능한 사항을 제안한다.

첫째, 자기주도적 서비스 이용의 핵심은 이용자를 중심에 둔 지원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적망으로 구성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계획 수립, 이용 지원, 자원 연계, 정산 지원 등 조력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모든 인력이 해당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과 관점, 개인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 기능은 개인에게 맡겨졌을 때 제대로 이행되기 어렵고, 관련된 정체성을 가진 조직에서 수행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모의적용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가 이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해당 역할의 폭, 전문성, 활동의 공간적 범위 모두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 또 다양한 기관이 이용자 자원에 관여하여 층이 두터워져 튼튼한 망을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연구자는 시범사업 기간, 또 본 사업 운영 초기에 이용자 지원 기능의 분석과 명료화를 통해 많은 조직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참여자와 가족에 대한 개인예산제 교육이다. 참여자의 주도성이 제도의 핵심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개인예산제의 취지를 이해하고 계획 수립과 이용에서 적극성을 발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교육과 촉진, 조력이 필요하다. 모의적용에서는 참여자 교육을 비중 있게 다루지 못했는데, 이를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여 이행할 필요가 있다(이한나, 2023). 셋째, 단기적으로 실천할 수 없는 과제이나, 근본적 변화 없이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과제로 장애인 서비스 환경의 조성을 들고자 한다. 서비스의 유연성, 이용자의 자기주도성은 가용 서비스의 폭이 넓을 때, 내게 할당된 급여가 충분하고 서비스에 접근 가능할 때 실현되는 가치이다. 주어진 급여량이 애초에 부족하다면, 충분한 급여를 받아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다면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된 제도라고 하더라도 의미를 잃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인복지 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 수준인 한국의 부족한 장애인복지 예산은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문제이다. 몇몇 대도시 지역을 제외한 인프라 부족, 지원 인력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다. 개인예산제가 취지에 부합하

는 제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환경적 요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는 장기적인 장애인 예산 확대 계획 속에서 목표를 세우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설령 개인예산제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의 자기주도적인 삶을 정책적 목표로 하는 모든 주체가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2023).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김도현. (2022. 6. 29.). 개인예산제의 해로움과 우리의 대안. **비마이너**.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81

김동홍. (2022).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의 성과 및 한계 (동문장애인복지관 경험을 중심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방안과 과제 정책토론회 자료집** (pp. 85-93).

김동홍, 정종화. (2021). 발달장애인의 개인예산제 참여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경계성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51, 139-172.

김진우. (2018). 발달장애인 지원에 있어서 영국 개인예산제도의 함의와 쟁점. **한국장애인복지학**, 41, 111-136.

안형진. (2024) 개인예산제도에 대한 국내 장애계 논쟁의 프레임 분석을 통한 자기주도 개인예산제의 도입 방안 모색. **제17회 장애인자립생활의 날 기념 2024 자립생활(IL) 컨퍼런스 자료집** (pp. 35-54).

원소연. (2010).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독일의 개인예산제도와 한국의 활동보조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2), 267-289.

유동철. (2012). 영국 장애인 직접지불제도의 정책적 효과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비판사회정책**, (34), 129-162.

윤재영. (2015). 발달장애인 개별예산 할당도구 비교 연구-ICAP, SIS, I-CAN의 동시 타당도를 중심으로. **재활복지, 19**(4), 35-60.

윤재영. (2016). 사람중심지원서비스 실천의 성과와 과제-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CIL+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 장애인자립생활모델연구·개발지원사업 2차 연도 성과보고회 자료집** (pp. 1-27).

윤재영. (2017). 성공적인 사람중심지원을 위한 객관적인 조건들 -서비스의 질을 담아내는 핵심성공지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 장애인자립생활모델연구·개발지원사업 3차 연도 성과보고회 자료집** (pp. 29-46).

이동석. (2015)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의 유형에 관한 국가 비교 연구-퍼지셋 이상형 분석의 적용-** [박사학위 논문,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동석, 김용득. (2013). 영국 서비스 현금지급과 개인예산제도의 쟁점 및 한국의 도입 가능성. **한국장애인복지학**, 22, 47-66.

이승기, 이성규. (2014). 직접지불제도와 개인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235-249.

이승기. (2016). 개인예산제도의 법적 근거 방안 고찰-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제연구**, 7(1), 139-155.

이한나. (2023).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행과 향후 과제: 2023년 보건복지부 모의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23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 71-87.

이한나, 김윤영, 이민경, 김동기, 김용진, 이정기, 전지혜. (2019). **사회서비스 분야 개인예산제도에 관한 기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한나, 하태정, 어유경, 김동기, 신권철, 최복천. (2021). **개인예산제 운영 모형 수립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한나, 하태정, 오욱찬, 김성희, 김동기, 신은경, 이동석. (2022).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1 단계 시범사업 기초모델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재웅, 김경미. (2018). 개별유연화서포트서비스에 참여한 발달장애인의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재활복지, 22**(2), 53-8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22. 1. 21.).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후보자의 장애인 정책 공약은 "깡통 다섯 개 선물세트"다 [성명서]. http://sadd.or.kr/index.php?_filter=search&mid=data&search_keyword=%EA%B0%9C%EC%9D%B8%EC%98%88%EC%82%B0&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16690

최석범. (2017. 10. 24.). "허점투성이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반대"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71024173048552758

한국장애인개발원. (2023). 2023년 장애인개인예산제 모의적용사업 안내.

Bradley, V. J., Fenton, M. H., & Mahoney, K. J. (2021). *Self-direction: A revolution in human service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Brewster, J., & Ramcharan, P. (2005). *Enabling and supporting person-centred approaches. Learning Disability. A life cycle approach to valuing people* (pp. 491-514). Open University Press, Maidenhead, .

Brüsseler Kreis. (2013). Personal Budgets. A new way yo finance disability services. *Brüsseler Kreis*.

Carr, S. (2010). *Personalisation: aroughguide (revised edition).* London : Social Care Institute for Excellence.

Duffy, S. (2021) *EU roadmap for user-centred funding for long-term care and support*. UNIC project. Brussels: https://www.unicproject.eu/publications/

Fleming, P., McGilloway, S., Hernon, M., Furlong, M., O'Doherty, S., Keogh, F., & Stainton, T. (2019). Individualized funding interventions to improve health and social care outcomes for people with a disability: a mixed-methods systematic review. *Campbell Systematic Reviews, 15*(1-2).

Glasby, E. W. (2013). *Personal Budgets and Health: a review of the evidence*. Kent: Centre for health services studies, University of Kent.

Leadbeater, C. (2004). *Personalisation through participation: A new script for public services*. Demos.

Leventi, K. (2021). *Models of Good Practice Report on Personal Budgets*. UNIC project. Brussels: https://www.unicproject.eu/publications/

Micai, M., Gila, L., Caruso, A., Fulceri, F., Fontecedro, E., Castelpietra, G., Romano, G., Ferri, M., & Scattoni, M. L. (2022). Benefits and challenges of a personal budget for people

with mental health conditions or intellectual disability: A systematic review. *Frontiers in Psychiatry, 13*, https://www.doi.org/10.3389/fpsyt.2022.974621.

Mladenov, T., Owens, J., & Cribb, A. (2015). Personalisation in disability services and healthcare: A critical comparative analysis. *Critical Social Policy, 35*(3), 307-326.

Needham, C., & Dickinson, H. (2018). 'Any one of us could be among that number': Comparing the Policy Narratives for Individualized Disability Funding in Australia and England.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52*(3), 731-749.

O'Brien, J., Pearpoint, J., & Kahn, L. (2010). *The PATH and MAPS Handbook*. Person-Centered Ways.

Pike, B.,O'Nolan, G., & Farragher, L. (2016). *Individualised budgeting for social care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y: International approaches and evidence on financial sustainability*. Health Research Board, Dublin.

Robinson, M., Blaise, M., Weber, G., & Suhrcke, M. (2022). The Effects and Costs of Personalized Budge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23), 16225.

Slasberg, C., Beresford, P., Schofield, P., & Harlow, E. (2013). The increasing evidence of how self-directed support is failing to deliver personal budgets and personalisation. *Research, Policy and Planning, 30*(2), 91-105.

 DOI: 10.23062/2024.04.3

The Personal Budgets Scheme: Current Status and Areas for Improvement

Lee, Hann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 personal budget scheme for disabled people, modeled after its North American and European precursors, is on track for implementation in 2026 in Korea as a national agenda item for the current government.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take a survey of the pilot projects that lead up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ersonal budget scheme and identify areas that need improvement. I review the key components of personal budgets and examine examples of early practices carried on by private-sector providers as part of the pilot projects. Among the core principles underlying personal budgets are self-direction and flexibility in service utilization. The personal budget scheme as it stands, however, does not come close to allowing individuals to self-direct their service use. This article points to the need for enhancing the workforce and providers involved, educating users, securing a sufficient supply of benefits, and strengthening the overall infrastructure.